

한국어과정 운영규정

□ 제 정 : 2012. 6. 29.

제1조(교육목표) 본 한국어 과정은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과 재외 교포들의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한 한국어 능력배양 및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증진을 그 목표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및 대상) 본교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대학 또는 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3조(입학신청 및 허가) 모집요강에서 규정한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모집요강에 명시된 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 관련 서류 위조자
2. 소정기일 내에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필요 경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5조(수업기간 및 일수) 본 한국어 과정 각 과정의 학습기간 및 일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시험) 성적평가는 필답시험, 구술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가 시험 형식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성적)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결현황, 과제등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가 평가 항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진급) 각 수강급수에 해당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결현황, 과제 등의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는 상위급수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성적이 미달하는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지도교수가 재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수료) 학업성적 통과자(성적 70점 이상)는 수료가 허가되고,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수업일수 1/4 이상 결석한 자는 수료를 불허한다.

제11조(경고및퇴학) 출석률 75% 이하인 자, 유학생활 불성실 자 및 무단 체류자격 외 활동(아르바이트등) 자 등은 경고조치가 취해지며, 경고 2회 후 면담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강제 퇴학 및 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10일 이상 수업 무단 결석자
2. 기숙사 10일 이상 행방불명자
3. 불법 행위자

제13조(체류자격외 활동) ① 한국어 과정에 입학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아르바이트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 추천자
2. 어학연수생 비자 (D-4)소지자
3. 1학기(6개월) 이상의 수학과정을 이수한 자

② 전항의 체류자격외 활동은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방학 중에는 제한없이 체류자격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규정한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에 관한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가 취해 진다.

제14조(수강료) 수강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환불) 환불사유가 타당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불한다.

제16조(기타) 기타 규정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로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당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원 어학아카데미운영규정”은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